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금에 관한 안내문

2023년 10월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사의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확보를 위해 투자자.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자산운용사(대주주, 계열회사, 대표펀드 매니저 포함)의

고유재산을 자기 공모펀드에 펀드 설정 당시 최소 2억 원의 금액을 최소 3년 간 투자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에 따라

2020년 11월 12일 설정된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하나UBS뉴딜임팩트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주주의 고유자금에 투자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1일자로 위 대주주 고유자금의 펀드에 대한 의무 투자기간이 3년이 경과되어

이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에 근거하여

향후 위 투자금이 회수되더라도 펀드 운용에 영향이 없으며 투자전망과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수완료 시 자산운용보고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므로 더욱 좋은

펀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 래 -

1. 펀드명 : 하나UBS뉴딜임팩트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설정액 :

하나UBS뉴딜임팩트증권자투자신탁[주식] 85억(10월6일 기준) 중 투자금액 2억원

3. 설정일 : 2020년 11월 12일(의무투자기간 : 2023년 11월 11일까지)

4. 비 고 : 향후 투자금 회수 시, 당사 홈페이지 통해 공시에정

직접 찾아 읽고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찾아 보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드림